제211회 영등포구의회
2018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유 승 용 의원 발의】

2018. 12. 1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　　과

의안 제64호로 2018년 11월 13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
다. 입양축하금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~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:「입양특례법」

나. 예산조치: 예산조치 필요.

다. 입법예고(2018. 11. 8. ~ 11. 13.)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요보호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❍ 주요 제정 내용은

- 안 제1조~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
-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
- 안 제4조에서 입양아동 실태조사,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, 교육, 홍보 등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5조~제6조에서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대상으로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

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

-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.

❍ 본 조례안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 및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측면에서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아동입양시설 입소보다는 가정에서 양육됨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에 따라 구민의 입양 인식 개선 및 입양 촉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은 필요해 보임

현재 입양 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, 의료비,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 받고 있으나 구 차원에서도 입양가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입양장려금 지원 규정에 대한 시행을 2019년 7월 1일부터 규정하였는 바,

향후 집행부에서는 입양장려금 지원액 결정 및 예산 확보, 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및 홍보 등 시행에 따른 준비가 필요해 보임.

관 련 법 령

■『입양특례법 』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,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3.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
4.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
5.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
6.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

제34조(사회복지서비스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,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5조(양육보조금 등의 지급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

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, 의료비, 아동교육지원비,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